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호 2091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.
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제2조(「기상산업진흥법」의 개정)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3조(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개정)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

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제69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「물환경보전법」의 개정)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9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(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의 개정) 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시장	제35조(등록의 취소 등) ①
・군수・구청장은 설계・시공	
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	
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	
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	
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·제2호 또는 제8호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	
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	4
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<u><단서</u>	
<u>신설></u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
	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
	예외로 한다.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기상청	제8조(등록의 취소 등) ①
장은 기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	
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	
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기	
상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	
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	
여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	4
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
<단서 신설>	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
	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
	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
	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3(측정기기 관리대행업	제32조의3(측정기기 관리대행업
의 등록취소 등) ① 환경부장관	의 등록취소 등) ①
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	
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	
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	
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4	
호,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	
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	
여야 한다.	.
1. ·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	3
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<u><단</u>	<u>다만,</u>
<u>서 신설></u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
	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
	예외로 한다.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9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특별	제69조(등록의 취소 등) ①

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전문정비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<단서 신설>

7. · 8. (생략)

② (생략)

· 1. ~ 5. (현행과 같음)
1. ~ 5. (현행과 같음)
1. ~ 5. (현행과 같음)
1. ~ 5. (현행과 같음) 6
1. ~ 5. (현행과 같음) 6 <u>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 6 <u>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</u>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
1. ~ 5. (현행과 같음) 6 <u>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</u>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

② (현행과 같음)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의9(등록의 취소 등) ① 환	제38조의9(등록의 취소 등) ①
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	
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	
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	
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	
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	
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	
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	5
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	
된 경우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「소상공인기본</u>
	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	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
	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
	<u>한다.</u>
6. • 7. (생 략)	6. •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등록취소 등) 특별자치시	제43조(등록취소 등)
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	
·군수·구청장은 확인검사대	
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	
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	
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	
만,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	
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	7
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<u><단서</u>	<u></u> 다만,
<u>신설></u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
	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
	예외로 한다.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